

# PPC회의 참관기

## Report of Professional Practise Commission Meeting

이근창/본 협회 국제위원장  
by Lee Geun-Chang

이 글은 제 8차 국제건축사연맹(UIA) 산하 Professional Practise Commission Meeting(전문 용역업 위원회)이 체코공화국 수도 프라하 Martinicky Palace(프라하성내)에서 지난 1999년 10월 8, 9일 양일간에 걸쳐 26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기협회에서 조영종씨가, 본 협회에서는 이인호 국제위원과 필자가 참석하여 회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필자주)

금번 8차 회의는 1998년 12월 워싱턴 회의시 보완 수정되고, 올해 2월 일본 나고야 이사회를 거쳐 제 10차 UIA 총회에서 채택된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UIA 건축 실무에 관한 국제표준 권고 협정)를 근거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임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이미 각 분과별 Topic과 전문실무위원회는 작년 워싱턴 회의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전문실무위원회에서는 주제별 내용을 연구, 조사하여 초안이 제출되었다. 전반적인 회의 순서는 주제별로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는 위원장인 미국 쉴러(Scheeler)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토의 안건의 검토, 북경 총회에서 채택된 권고 협정내용의 세부지침 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의 안건에 Publication policy와 WTO 활동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 장소 유치를 위해 일본이 참가신청 했음을 통보했다.

2. 1998년 12월 워싱턴(Washington D.C) 회의록이 추인되었으며 본 회의록은 1999년 2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주요내용은 :

- 전문용역 정책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전문 실무위원회장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 본 위원회 비서는 북경대회에 제출할 서류를 통합 작성한다.

- 자문위원회에서는 UIA 회원국의 답변 내용과 건의사항을 검토한다.

- 자문위원회는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한다.

- 전문실무 위원회와 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다음의 부가적인 지침안을 작성한다.

① 건축 용역업의 업역 및 실무 형태 :

Edward D. Silver (싱가폴)

② 주제국내에서의 실무 : James Scheeler

(미국)

③ 지적 소유권 및 Copyright : Tillman

Prinz (독일)

④ 전문협회의 역할 : Herve Nourissat (프

랑스)

3. 1999~2000년의 PPC 운영 절차에 대한 UIA 회장의 서면 내용이 통보 되었으며, 현재 WTO로부터 위탁받아 진행되고 있는 협정안 작성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최근 TWO로부터 입수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회계사에 관한 협정이 '98. 10월에 통과되었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협정안도 다음 GATS협상 회기에 제출되어야 하고 일단 GATS에서 통과되면 GATS에 서명한 국가들은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회계사 관련 협정서를 사용하여 타분야 전문업에 적용하려는 추세이나 건축설계용역 부분은 현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각국의 정부에 현 진행상황이 정확히 전달되고, 2000년 말까지에는 각국 정부의 입장이 WTO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권고했다. 이처럼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결과물이 각국의 건축관련 협회를 통하여 정부에 전달되고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어 무역장벽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UIA의 최종 목표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PPC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 견을 1999년 말까지 각 분야를 담당한 전문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고, 2000년에는 각국의 정부를 통하여 WTO에 입장을 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교육과 실무와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임으로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UIA PPC의 의견을 각 지역 교육 담당 실무위원(한국이 속해 있는 4지역은 오스트랄리아의 Mrs. Cox)이 통합 정리하여 UNESCO 교육위원회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서로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은 PPC 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전자

투표를 통해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북경에서 승인된 권리 협정은 진행방법과 골격이 승인된 것이고, 각국의 독특한 정책과 입지에 따라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바란다고 했다.

5. 건축사가 되기 위한 건축 교육의 정의와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나 타 국가들은 혼선을 벗고 있고 너무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상호 인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본 문제는 고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에 관련하여 2000년 7월까지는 UNESCO에서 초안이 작성되어 11월중에 서로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문단(Joint panel board)의 구성은 기존의 5개 지역 교육관련 대표와 PPC의 실무위원회(Drafting panel)이 연합하고 PPC의 비서(General secretary)를 포함한 10~12명으로 구성하면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고문단의 구성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회장단에서 재구성한 후 올 11월중에 각국에 통보하여 주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적합 여부를 위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

통보될 서류는 기본틀(Basic frame work)에 대한 사항과 정부에 보낼 내용을 UIA의 명으로 보낼 것이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주관 부서 이름과 내용을 발신자에게 보내주면 답변해 주기로 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축사는 왜 교육이 필요한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제도 인정과 관련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재정을 포함) 사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기준의 평가를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하는가?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단어의 선택과 번역이 정확히 되어야 하고, 서로 Over lapping 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명료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소수의견으로는 국제형건축사와 국내형건축사를 분리하여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며, 각국의 주관부서(Lead body)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 수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 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6. 1999년 9월 24일 EU 15개국이 참여한 프랑스 파리회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럽시민의 기본권리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암스텔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154.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

- 건축주와 건축사는 공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공공개발인 경우에는 문화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중앙정부의 건축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 건축교육은 관련 전문업에 관련된 과목 뿐 아니고 공공이익에 대한 교양 과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 개발의 목적에 환경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 민주화의 관점에서 오늘날 다양하고 다(多) 문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건설된 환경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도시와 공간개발의 수준을 결정한다.

7. 자적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소유권을 설계자 개인 또는 회사, 단체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참조와 복사를 건축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다. 어떠한 결론 없이 여러 예시를 들어가며 난상 토론되었으나 결국 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과 상세, 시방서 등에 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 개발도상국의 사용 납용 내지는 로얄티를 요구하게 하여 세계시장을 이면에서 잠식하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의 Tillman Prinz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초안 내용을 근거로 이견이 있으면 제출하기로 하였다.

8. 주재국에서의 실무정책이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중 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국가에서는 건축사 등록제도 자체가 없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려되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이 요구 되었다. 특히 이번 PPC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과 캐나다를 비롯한 UIA 비회원국의 의견도 존중되어 수용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Title protection과 Practice protection이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서로의 인정 범위를 규정하기로 하였다. 본 규정은 PPC 의장인 미국 James Scheeler 교수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용역의 범위(Scope of practice), 용역의 형태(Form of practice)에 관련하여 싱가풀의 Edward D. Silver가 작성하여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을 검토하여 각 국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0. UIA 협약과 지침서의 관련 정부 또는 관심있는 기관과의 대화 Channel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

을 프랑스 Herve Nourissat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내용을 검토하여 E-mail 주소 ACE.CAE@SKYNET.BE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11. 건축관련 협회의 구성을 정관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을 제출키로 하였고, 각국의 건축 실무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배부된 양식에 따라 제출키로 하였다.

12. 차기회의 장소유치를 위해 이집트, 일본, 코스타리카가 경합을 벌였으며, 투표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집트 카이로를 2000년11월 회의 개최지로 결정하였다.

13. 기타 사항으로 설계비 산정 기준과 입찰 방법에 대한 말레지아의 Dr. Albakri의 보고가 있었으며, 체코 회장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양일간에 걸친 정식회의를 마감하였고, 다음날 참석자를 위한 관광이 있었으나 비가 부슬부슬 내려 원만한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기 배부된 Agenda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이전회의에서 결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회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 차례에 걸쳐 각 분과별 전문실무팀이 구성되어 이미 서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확실한 개념 정립이나 국내에서의 방향설정이 안된 내용으로 회의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소견으로는 PPC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한 국내에 전문인력을 3단체의 힘을 합쳐 확보하여 각 실무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나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앞서 국내적으로 건축사 상호 인정에 관한 건축계의 일관된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본 건의 WTO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각 분과에서 작성된 초안들은(회원협회인 건축가협회와 상의 후) 번역하여 추후 관련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할 예정이다.

여러 통로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상호인정 문제는 현재 우리 건축사의 문제만은 아니고 후배들에게 대한민국 건축사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